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군용비행장·군사격장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20. 11. 27.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소음영향도 조사주기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 보상금 지급대상·기준·보상금액·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안 제2조)

소음영향도 조사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조사 등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거와 소형화기 사격장을 소음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

나.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안 제3조)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산정단위 및 기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절차를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함

다.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제5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자체·주민의견 수립 절차를 규정하고, 각군 참모총장 등이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임무를 부여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국방부장관이 각군 참모총장 등에게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임무를 위

임하는 근거를 명시하고, 측정망 설치를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금·원상복구비의 청구절차 등을 마련함

마. 소음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사격일수에 비례한 보상금 산정기준, 전입시기 등에 따른 감액기준 등을 규정함.

바. 보상금 지급절차(안 제12조 ~ 제21조)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 신청, 지급 등)에 대한 수행방법과 서식, 법정기한, 보상금 지급 기산일 등을 상세히 규정함.

사. 소음대책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2조 ~ 제26조)

중앙·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운영방법,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기준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합 의 :

라. 기 타 : 1) 법령 3단비교표, 별첨

2) 행정규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소음영향도 조사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에 대하여 대상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현황, 소음피해 정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소음영향도 조사 및 소음대책 지역 지정·고시 등을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보상대상기간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20mm 미만의 구경을 갖는 화기로 사격하는 군사격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실내사격장 또는 방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격장
2. 주둔지 및 GOP 내 사격장
3. 비행장 내 위치한 사격장
4. 민간인 통제선 이북에 위치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의 실효성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격장

③ 국방부장관은 소형화기 군사격장이 제2항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제외할 때에는, 미리 시·군·구별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 제20조의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용비행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다. 제3종 구역

1)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세종특별자치시·강릉시·군산시·서산시·오산시·원주시·청주시·충주시·평택시·예천군에 소재한 군용비행장 :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3) 1)과 2) 이외의 군용비행장 중 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수원시에 소재한 군용비행장별로 조사한 ‘측정지점별 배경소음도의 산술평균(이하 “평균 배경소음도”라 한다)’의 최소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큰 군용비행장 :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4) 1)과 2) 이외의 군용비행장 중 세종특별자치시·강릉시·군산시·

서산시·오산시·원주시·청주시·충주시·평택시·예천군에 소
재한 군용비행장별로 조사한 평균 배경소음도의 최대값보다 평균
배경소음도가 작은 군용비행장 :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5) 3)과 4)에도 불구하고 3)과 4)에 모두 해당하는 군용비행장과 3)과
4)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군용비행장 :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90 미만

2. 소형화기 군사격장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82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77 이상 82 미만

다.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dB(A)) 69 이상 77 미만

3. 대형화기 군사격장(제2호의 군사격장 이외의 군사격장을 말한다)

가.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94 이상

나.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90 이상 94 미만

다.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dB(C)) 84 이상 90 미만

4.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형화기 군사격장 중 군용항공기를
이용하여 사격하는 군사격장의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소음영향도 기
준은 WECPNL과 dB(C)를 조합한 방안에 의하며, 구체적인 조합 방법
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1호 다목의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 방법은 국방부장관이 정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積)이 표시된 지형도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가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⑧ 국방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에는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시·군·구별 주민대표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⑨ 국방부장관은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각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라 한다)에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하며,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⑩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4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르며,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1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의견수렴의 절차·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①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자와 공항개발사업시행자는 민군공용비행장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고시 등)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손실보상 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접수 결과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

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보상금액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원상회복 비용의 청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직접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원상회복 비용의 청구절차는 제8조에 따른다

제10조(민간항공기의 운항 제한)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민군공용비행장에서 민간항공기의 운항횟수나 야간비행의 제한을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보상금 산정기준) ①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해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보상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보상금	월6만원	월4.5만원	월3만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격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월별 실제 사격일수에 비례하도록 보상금 기준을 정한다.

1. 사격이 없는 경우 : 해당 월은 보상금 미지급
2. 사격일수가 1일 이상 8일 미만 : 해당 월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1/3 지급
3. 사격일수가 8일 이상 15일 미만 : 해당 월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2/3 지급
4. 사격일수가 15일 이상 : 해당 월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전액 지급

④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공제 또는 감액은 제2항 및 제3항의 보상금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한다.

1. 198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전입한 경우 보상금의 30%를 감액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전입한 경우 50% 감액한다. 단,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감액하지 않는다.

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설치 이전부터 전입한 경우

나. 전입 당시 미성년자(전입일이 2013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20세에, 전입일이 2013년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19세에 각 성년이 이르는 것으로 본다)인 경우

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라. 1989년 1월 1일 또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가 소음대책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거주지에 재 전입한 경우

2. 직장 근무지, 사업장(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이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이며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100k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제2항, 제3항, 제4항제1호를 적용한 금액에서 30%를 감액하고, 해당 소음대책지역 밖이며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정문으로부터 최단거리 기준 100km 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100% 감액

⑤ 보상공금은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보상공금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한 일수만큼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1. 현역병으로 군 복무한 기간(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포함)
2.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3.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4.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

⑥ 제1항의 주민이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는 건축물이 보상공금 산정의 기준이 되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보상공금 기준이 더 큰 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이 소음대책지역의 구역 간 경계에 걸쳐 있는지 여부는 법 제21조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

⑦ 제5항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법 제21조의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정한다.

제12조(보상공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상공금 지급 대상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할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명시한 도면(이하 “군소음지도”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9항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매년 12월 말일까지 제11조제3항에 따른 각 군사격장의 당해년도 월별 보상금 기준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안내 자료를 작성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배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각 구역에 속하는 지번의 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

인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임하여 세대 대표자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민·입원·수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자, 공무원의 경우 직장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1부

2.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3.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 선정서 1부

4.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확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가. 이민 등 국외체류의 경우 : 재외공관의 장

나. 입원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

다.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 수용기관의 장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읍·면·동장

5.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초)본,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 대표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11조제4항제2호와 제5항제1호 및 제3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 의무경찰대원의 복무기간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 : 소방청장
4.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법무부장관

⑤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동일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보상금 산정은 ‘보상대상기간’에 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매년 5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보상금 신청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별지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통지서로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대리인이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이유
4. 보상금 및 그 산출방법
5. 보상금 지급 결정 연월일
6. 지급 절차
7. 이의신청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한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관할 시

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 받은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의를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결정 검토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대하여 결정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결정 통지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거나 통보한 보상금을 지급 시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급결정 내역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16조제2항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보상금 부족 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결정 내역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6조제4항의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부족예산

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 부족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자에게 제14조제1항제2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 기한) ① 법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자는 매년 8월 31일까지
2.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3. 제16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자는 매년 12월 31일 까지

② 제1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가 제1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한을 경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기한의 적용) 이 법에 따른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3호의 12월 31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해의 마지막 근무일을 기한으로 한다.

제21조(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보상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제14조 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2022년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 경우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대상 기간에 상응하는 보상금은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1년분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19조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연되는 기간만큼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2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0조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나. 기획재정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2. 위촉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서 소음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소음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라. 그 밖에 소음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3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중앙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1조에 따른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간사는 시·군·구의 군소음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임명직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위원은 제22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③ 지역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정한다.

⑤ 시·군·구청장은 필요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2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심의위원회 또는 지역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기피신청을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6조(위촉위원의 해촉)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 관련 자료를 전산화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 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4조 내지 제18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상금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축 및 유지관리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 제한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2항 및 4항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 및 재심의신청 접수 및 지급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환수에 관한 사무
7. 법 제20조제1항제4호 보상금 재심의 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금 결정 및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무
9. 법 제23조에 따른 결산보고에 관한 사무
10. 법 제24조에 따른 보상금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0. 0. 00.>

손실보상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년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손실발생연월일					
손실발생장소		(면적 : m ²)			
손실의 내용					
보상요구액 및 산출방법					
그 밖의 손실 증빙자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상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보상대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 ※ 주민등록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① [] 취업여부			② [] 사업자등록 여부		
	직장명		사업장명			
	직장 위치		사업장 위치			
	재직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 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거주 제외 기간	③ [] 현역병으로 군 복무 ([]육군, []해군, []공군, []해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	~ 년 월 일 년 월 일
	④ [] 이민 등 국외체류	~ 년 월 일 년 월 일
	⑤ [] 교도소 등에 수용	~ 년 월 일 년 월 일
	⑥ [] 그 밖에 사유 (사유 :)	~ 년 월 일 년 월 일

⑧ 보상금 지급통장	은행	계좌번호
------------------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소재지,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근로자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3. 세대 대표 선정서(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4. 보상금 신청 위임장(이민·입원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4. 현역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포함)의 복무기간 5.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취업 및 재학 상태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출입국·병무·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조회 또는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는 5월 31일까지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신청인에게 통보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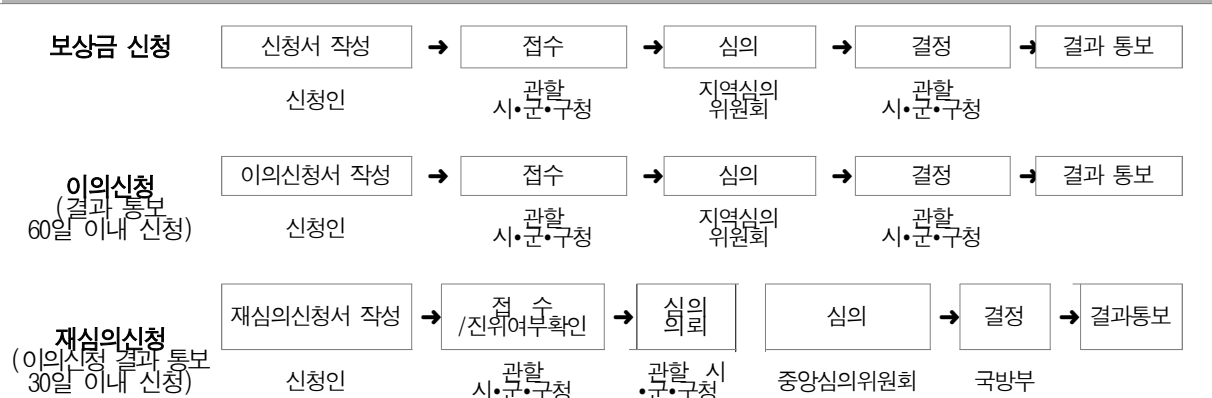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란에는 취업하여 재직 중인 경우 직장명, 직장위치,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기간을 적습니다.
- ②란에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명, 사업장위치, 보상대상기간 중 사업기간을 적습니다.
- ③란에는 현역병으로 복무한 경우, 구체적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여부와 보상대상 기간 중 복무기간을 적습니다.
- ④란에는 이민 등 국외체류한 경우, 보상대상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을 모두 적습니다.
- ⑤란에는 교도소 등에 수용된 경우, 보상대상기간 중 수용기간을 적습니다.
- ⑥란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고 보상대상기간 중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적습니다.
- ⑦란에는 신청인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 대표자	성명 (한자)	()	주민등록 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본인들은 위 세대 대표자에게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2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3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4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5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6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7	대표자와의 관계	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 등록 번호	-

첨부서류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세대 대표자 선정방법

1. 세대원 또는 세대원의 법정대리인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세대원 중 성년자를 세대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2. 위임자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보상금 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사람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확 인 서

위 위임자는 []이민 등 국외체류
 []입원 중 임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교도소 등에 수용
 []그 밖의 경우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보상금 결정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보상	제	호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결정주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액				

※ 보상금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뒤쪽)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 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가 시·군·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되거나 신청인에게 통보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액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의 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소음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합니다.

이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보상금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 보 받은 일자	년 월 일
---------------------------------------	-------

보상금 결정 결과	결정주문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
	지급액	

이의신청 취 지 및 사유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 류	1.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
고,

9월 15일까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이의신청 보상	제	호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결정주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액				

※ 이의신청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뒤쪽)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 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의 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이의신청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합니다.

보상금 ([] 이의신청, [] 재심의) 결정 동의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처리기한	이의신청	10월 31일
		재심의	12월 31일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①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정 일자	년 월 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정 결과	② 결정주문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		
	② 지급액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상의 보상금 결정 결과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정본 1부 2.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 1부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의신청) 결정 동의서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의 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재심의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재심의) 결정 동의서를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의 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3.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상의 결정일자를 적습니다.
2. 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상의 결정주문과 지급액을 ②란과 ③란에 적습니다.
3. 재심의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 통지서 상의 결정주문과 지급액을 ②란과 ③란에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심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의신청 결정 결과를 알게 되었거나 통 보 받은 일자	년 월 일	
이의신청 결정 결과	결정주문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
	지급액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재심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임장 1부 4.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국방부장관은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심의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에 대하여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달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재심의 결정 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재심의 보상	제	호
신청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세대 대표자 또는 대리인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결정주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 대상 / [] 제외대상으로 결정합니다.		
지급액			

※ 이의신청 결정 이유는 뒤쪽에 적습니다.

년 월 일

국방부장관

(서명 또는 인)

(뒤쪽)

결정 이유

보상금 지급 대상 인정 여부

지급액 산출 결과

안내사항

1. 재심의 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12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상금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12월 31일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서 상의 통장으로 해당 보상금 지급액이 입금됩니다.
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자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상금의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과 관련하여 입은 소음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 등이 불가합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소음보상TF	
연 락 처	02 - 748 - 5894